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면접 교통비 지급 근거 신설 〉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20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면접 교통비 지급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27일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면접 교통비 지급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9조의2(면접 교통비의 지급)</u> <u>① 구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가 면접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구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의 지급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는 면접 준비 및 응시에 따른 교통비 등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특히 지방 거주자의 경우 원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면접 참여 자체를 제약함으로써 취업 기회의 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¹⁾.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9조²⁾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접 교통비와 관련한 별도의 규율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면접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채용 절차의 실질적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민간 구인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도의 확산을

1)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의 조사 결과, 서울 및 수도권의 평균적인 면접 비용은 회당 47,000원 내외이나, 지방은 58,000원으로 나타났고, 면접 비용이 부담되어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32%로 나타남.

“면접 1회당 평균 5만원 지출...구직자 68.2% “부담된다”(뉴시스, 2020.08.20.)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820/102564653/1?utm_source=chatgpt.com

2) 아래의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채용 전형료 등 비용 부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면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는 구인자가 별도로 부담을 요구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구직자의 이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9조의 ‘채용심사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유도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면접 교통비의 지급근거와 관련하여 면접 교통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우선, 면접은 기업이 설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지원자가 그 요구에 따라 이동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용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용 보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통해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여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면접 교통비는 취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개인의 기회 추구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시험 응시료나 자격증 취득 비용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는 구직자가 이동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구직 비용으로 볼 수 있어 구인자에게 이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음.

한편, 개정안은 면접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이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구인자에게 일정 부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구인자 부담과 구직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입법적 고려로 이해되는바, 구직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교통비로 인해 구직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통비 지급여부, 기준, 방법 등은 구인자가 면접장소·시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

참고 1

지자체 면접비용 등 지원 사례

구분	서울시 “서울청년수당”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충남 “구직자 면접수당 지원사업”	경북 “청년애꿈수당”	전북 “전북 청년 취업지원 패키지”	전남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사업”
도입 시기	2016년	2020년	2011년	2021년	2025년 * '19~'24년 운영하던 취준꾸러미가 통합됨	2017년
지원 대상	① 만 19~34세 서울 거주 청년 ② 중위소득 150% 이하 ③ 미취업 졸업자 ④ 단기 일자리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근로계 약 등) 면 접도 가능	① 만 18~39세 경기도 거 주 청년 ② 경기도 내 + 타 지자체 소재 기업도 지원 가능 ③ 이직자 가능 ④ 단시간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아르 바이트 등) 면접도 가능	① 도내 소재 선정된 기 업·기관 ② 면접자의 거주지, 연령제한 없음	① 만 19~39세 경북 거주 미취업 청년 ② 경북 내 중소·중견 기업 면접 시 지원 ③ 이직자 지원불가	① 만 18~39세 전북 거주 청년 ② 5인 이상 기업·기관 면접 시 지원 ③ 이직자 지원불가	① 전남 소재 5인~300 인 미만 중소기업 ② 면접자의 거주지, 연령제한 없음 ③ 이직자 지원불가
지원 내용	① 월 50만원, 최대 6개월 ② 성장 지원 프로그램 (취·창업 및 자기 계발 지원)	1회 5만원, 최대 50만원 (10회)	1회 3만원, 최대 9만원 (3회)	1회 7만원, 최대 35만원 (5회)	1회 5만원, 최대 10만원 (2회)	1회 5만원, 최대 10만원 (2회)
지원 규모	20,000명	174,000건	200개사	350건	200명	300건
지급 방법	클린카드 (체크카드) 현금	지역화폐	현금	현금	현금	현금
운영 주체	서울시	경기도미래 세대재단	(재)충남 경제진흥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전북청년 허브센터	(재)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경제 진흥원